

企業課稅의 機能과 課題



車 鉉 權
(서울大 社會科學大 教授)

I. 企業課稅의 機能

企業에 대한 課稅를 課稅對象別로 보면 所得 課稅를 위시하여 資產課稅, 消費課稅, 流通課稅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나 특히 企業을 독자적인 課稅客體로 삼고 있는 것은 所得課稅나 資產課稅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도 法人稅나 事業所得稅가 중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租稅가 그러하듯이 企業課稅도 財源을 조달하는데 그 本來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企業活動을 저해하지 않는 方法으로 課稅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아니라 物價安定이나 積省成長의 달성, 公害規制 등 다른 經濟的 目的을 달성하는데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原則적으로 課稅의 歲入調達機能과 安定化 내지 統制(規制) 機能은 구별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租稅가 두가지 機能을 同時에 수행하거나 또는 한 機能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다른 機能을 수행하지 못한다.

우리 經濟에 있어서도 政府部門의 財政活動이나 資源配分에 대한 介入을 論外로 한다면 經濟의 發展은 주로 企業의 生産, 雇傭, 投資 등 諸活動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企業活動에 영향을 미치게 될 企業課稅는 우리나라의 經濟規模만이 아니라 經濟成長이나 貯蓄水準과도 매우 직접적이고 큰 關係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事業者總數는 약 733千名으로 推定(77年 下半期 附加價値稅 納稅人員)되고

있으나 이 중에는 15.6千을 다소 넘는 法人이 포함되어 있다. 또 1975年 分配國民所得資料에 의하면 非法人企業所得(農業所得을 除外한 個人業主所得)은 14,312억원(國民所得의 19.5%)에 달하고 法人所得(配當, 法人貯蓄, 法人稅 合計)은 4,639억원(國民所得의 6.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75年度 事業所得稅收入은 658억원(非法人企業所得의 4.6%), 法人稅收入은 1,305억원(法人所得의 28.1%)에 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國內貯蓄의 構成을 보면 1975년에 法人貯蓄이 54.5%, 家計貯蓄 14.2%를 각각 접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有力한 事業이 거의 모두 法人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周知된 事實의에도 企業課稅라는 觀點에서나 貯蓄(投資)이라는 觀點에서 法人企業의 役割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零細事業者의 比重이 큰 非法人企業에 대한 課稅나 法人에 대한 課稅는 모두 公平한 負擔이라는 側面과 經濟的 效率이라는 側面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個人業主所得에 대한 課稅와 法人에 대한 課稅를 同一하게 取扱할 수는 없다. 물론 個人業主에 대한 課稅와 法人에 대한 課稅가 稅負擔이나 課稅要件 등에 있어서 크게 다르게 되면 이에 따라 社會的인 不公平이 생겨나게 될 것이지만 生産活動을 組織하는 單位로서의 個人과 法人은 그 役割이 다르기 때문에 兩者를 같이 取扱한다는 것은 不合理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企業課稅에서 中心的인 地位를 占하고 있는 法人稅制를 對象으로 하여 그 機能을 살펴보기로 한다.

法人稅라는 課稅樣式도 財源調達이나 그밖의 經濟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이므로 그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公認된 原則에 符合되어야 한다. 理想的 稅制를 규정하는 要件에는 여러가지 接近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公平한 租稅構造의 編成이라는 接近과 經濟效率의 달성이라는 接近이다.

公平한 租稅構造란 經濟狀態가 같은 사람은 같이 取扱하고 經濟狀態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適當한 差異를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前者를 水平的 公平, 後者를 垂直的 公平이라고 부르지만 課稅의 公平을 實現하기란 용이한 일 은 아니다.

이는 課稅의 公平을 이룩하기 위해 먼저 客觀的이고 明白한 個個人의 擔稅能力이 규정되어야 하지만 실사 理論上 그러한 能力을 包括的 所得(經濟的 所得)概念에 의하여 규정하더라도 그러한 概念을 現實的인 課稅標準으로 制度化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稅負擔을 어떻게 配分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問題도 있다. 예컨대 比例課稅, 累進課稅, 逆進課稅등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날 公平課稅와 累進課稅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있으나 累進課稅를 선택하더라도 累進度 및 所得階層別 累進度의 變化, 最高稅率과 最低稅率의 크기, 그리고 零稅率을 적용하여야 할 所得의 범위등 일련의 어려운 決定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에 法人稅는 生産活動의 組織으로서의 法人에 대한 課稅라는 점에서 法人의 生産 및 投資(貯蓄) 活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法人企業의 그러한 意思決定을 所望스러운 方向으로 誘導하는 役割도 담당하여야 한다. 元來 租稅原則으로서의 經濟效率이란 課稅의 中立性을 뜻하고 있고 課稅가 기준하는 分配狀態를 변화시키지 않을때 課稅의 中立性, 즉 經濟效率이 달성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混合經濟組織下에서는 租稅를 政策手段으로 이용하여 資源配分의 最適狀態를 이룩하는 政策課稅의 重要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같은 最適化를 위한 接近에 대해서는 그 施行上의 어려움과 그 濫用에 대한 두려움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課稅의 歲入調達機能

과 誘引機能이 非兩立的인 關係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租稅誘引이 既得權化, 慢性化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法人稅도 그 課稅標準이 所得이라는 점에서 먼저 課稅의 公平이라는 觀點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또 法人企業이 담당하고 있는 經濟的 機能이라는 側面에서 法人稅가 法人의 企業活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經濟的 效果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法人稅가 法人의 負擔이 되는가 또는 轉嫁되는가에 따라 法人稅의 公平이나 그 經濟的 效果는 差異를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法人稅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轉嫁問題를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 즉 公平과 轉嫁問題 그리고 經濟效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I. 企業課稅의 課題

가. 法人稅와 課稅의 公平

法人稅가 短期下에 轉嫁되지 않고 法人所得에 의하여 負擔되든, 또는 그 負擔이 轉嫁되든간에 法人稅는 課稅의 公平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만일 法人稅가 嫁轉되지 않고 그 負擔이 法人所得의 삭감이라는 형태로 配當과 留保利潤을 줄이게 되면 株主에게 差別的인 二重課稅를 과하는 결과가 생겨난다. 이는 配當所得이외의 財產所得에 대하여는 1회에 限한 課稅가 되는데에 반하여 法人所得에 해당하는 所得部分에 대해서는 重課稅가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配當所得을 수취하는 株主가 低所得者일 경우 配當所得은 당연히 非課稅될 수 밖에 없으나 法人稅로 인하여 課稅되는 결과가 생겨 나게 된다. 그 反面에 法人의 社內留保利潤중 高所得層에 歸屬되는 利潤에 대해서는 所得稅를 적용, 課稅하는 경우보다 輕課되는 결과가 된다.

法人稅가 轉嫁된다면 賣上稅와 같아지게 되지만 그 稅負擔이 각종 商品에 대한 支出에 따라 配分되기 때문에 不公平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法人所得에 대한 課稅는 그 負擔이 轉嫁되지 않든 간에 課稅의 公平을 저해하는 性質을 갖고 있으나, 株式이 주로 高所得層에

의하여 保有된다면 法人稅는 稅制全體의 累進의 負擔構造를 강화할 수도 있다. 그밖에 同族法人의 경우 株主는 資本利得의 형태로 事業利潤을 實現하여 個人所得稅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大法人의 法人稅가 주로 留保利益에 의하여 充當된다면 長期下에 있어서는 株價의 低下로 株主의 負擔을 늘리게 되지만 短期的으로 보면 配當의 低下에 의하여 株主의 직접 負擔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들 要因은 모두 法人稅가 株主의 不利益이 되는 不公平을 緩和하는 要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法人稅가 지니고 있는 不公平한 문제점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法人稅는 法人實在說을 근거로 하여 課稅되는 것보다 法人擬制說의 立場에서 法人稅와 個人所得稅를 統合하는 것이 소망스럽고 그렇게 함으로써 法人所得에 대한 別途의 課稅에서 발생하는 不公平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株式資本의 法人에의 流入도 촉진하고 또 法人稅의 消費者에의 轉嫁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法人과 個人(株主)을 統合하여 課稅하는 方式은 稅收缺陷을 낳고 施行上의 難點을 제기하게 될 것이지만 課稅의 公平이라는 側面에서 커다란 改善을 의미하게 된다. 더우기 公平이라는 概念은 効用概念이 成立되는 個人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概念이며, 法人稅가 法人所得에 歸着된다 하더라도 그 事實만을 갖고서는 法人稅의 公平與否를 결정할 수는 없다.

나. 法人稅의 轉嫁問題

法人稅의 轉嫁問題란 法人稅의 부과로 인하여 法人企業이 어떠한 反應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法人稅의 賦課에 따른 生産量의 變化, 따라서 生産物의 價格變化에 관한 문제이다. 이같은 문제는 보통 短期와 長期로 나누어 分析하게 되지만, 前者에 있어서는 法人稅의 賦課에도 불구하고 法人部門에 投下된 資本은 변화하지 않으나, 後者に 있어서는 法人稅로 인하여 法人과 非法人部門간의 資本構成이 변화한다고 假定하게 된다.

法人稅의 轉嫁문제는 近代財政論의 中心課題가 되어 왔고 計量分析을 포함하여 수다한 理論

分析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그 結論만을 要約·提示하기로 한다.

傳統的 見解에 의하면 完全競爭, 또는 完全獨占이 支配하고 法人稅가 正常利潤을 감소시키지 않는 限 法人稅는 轉嫁되지 않는다. 즉 法人企業이 純利潤을 極大化하는 方向에서 行動을 하고 있다면 短期下에서 그 生産量, 따라서 生産物의 價格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法人稅는 稅額만큼 法人利潤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傳統的인 見解에 있어서는도 現實적으로 法人稅가 轉嫁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法人稅의 課稅標準인 所得의 概念에는 正常利潤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正常利潤에 課稅하게 되면 당연히 轉嫁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費用에 대한 마르크·업(mark up)로서 價格이 形成된다면 法人稅는 轉嫁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不完全競爭이나 寡點下에서 法人稅의 增收은 企業으로 하여금 價格을 상승시키는 信號가 될 수도 있다.

만일 法人稅가 短期的으로 株式資本에 歸着된다면 長期的으로 보아 株式資本의 一部가 法人部門으로부터 非法人部門으로 移動될 수도 있다. 이같은 部門간의 資本移動은 資本全體의 收益率에 영향을 미쳐, 그 結果로 法人稅負擔의 一部가 法人部門의 資本所有者로부터 非法人部門의 資本所有者에 轉嫁된다. 또한 이같은 部門간의 資本構成變化와 이에 따른 生産量 및 相對價格의 變化를 통하여, 對應하는 消費者에게도 그 負擔의 一部가 轉嫁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만일 法人部門에 投下된 資本의 社會의 收益率이 非法人部門보다 높다면 法人稅의 부과로 法人部門의 資本投下が 過小하게 되고, 非法人部門의 資本投下が 過大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效率性의 損失은 돌이킬 수 없는 매우 큰 損失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 經濟의 效果

法人稅는 生産 및 投資의 決定單位로서의 法人의 意思決定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한 經濟的 效果는 法人稅의 轉嫁與否에 따라 크게 다른 樣相을 나타내게 된다. 만일 法人稅가 轉嫁되지 않고 法人所得을 삭감하는 형태로 法人稅가 부담되고 있다면, 法人稅의 輕減은 法人所得의 增

大를 통하여 法人의 生産 및 投資에 대한 擴張效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反面에 法人稅가 완전히 轉嫁된다면, 法人稅率의 引下는 法人稅轉嫁分을 低下시켜 法人이 生産하는 財貨의 價格만을 引下하고 法人所得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같이 法人稅의 經濟的 效果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法人稅의 轉嫁問題를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資本形成에 대한 法人稅의 效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일 法人稅가 轉嫁되지 않는다면 法人稅의 負擔은 法人所得에 歸着된다. 이에 따라 個人所得稅, 특히 比例所得稅보다 貯蓄減少效果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첫째로 대다수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高所得層의 負擔을 크게 늘리고, 둘째로 法人稅負擔으로 留保利潤이 감소되는 것만큼 貯蓄을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어 있는 오늘날의 法人에 있어서는, 投資에 관한 결정은 주로 經營管理層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러한 결정은 收益率이나 貨幣資本의 利用可能性, 그리고 損失扣除등에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法人稅가 轉嫁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法人의 課稅後收益을 감소시키면, 課稅前 收益을 확보하기 위하여 實質投資를 늘릴 수도 있고(所得效果), 投資意欲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代替效果) 또는 經營과 資本이 分離되어 있을 때 經營管理者가 所得效果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所得效果와 類似한 效果의 影響을 받을 수도 있다. 實證的 研究에 의하면 法人稅率의 1% 引下가 投資에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는다는 結果와 投資를 0.2%만큼 增加시킨다는 結果가 다같이 導出되고 있다.

企業投資는 投資收益과 함께 可用資金量에 의존한다. 法人稅가 轉嫁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이같은 課稅는 新投資에 充當될 資金量을 감소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留保利潤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投資意欲을 萎縮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企業金融에 있어서 內部留保의 役割이 커질수록 그러한 可能性도 增大된다. 그러나 法人稅와 投資資金과의 關係는 課稅方法에 의해서도 큰 影響을 받는다. 예컨대 稅法上의 減價償却에 대

한 措置나 損失扣除制度가 投資의 危險負擔을 줄이고 資金의 利用可能性을 증가시킬 때 投資에 대한 誘因은 강화되는 것이다.

라. 經濟效率

法人稅는 經營組織形態의 선택이나 企業統合, 企業資金調達方法, 經營의 效率性에 대해서도 影響을 미치게 된다. 個人所得稅의 限界稅率이 法人稅보다 높으면 法人에의 組織化가 촉진되고 中小法人에 대하여 輕減稅率 등 租稅上의 特惠措置가 적용되면 法人의 分割이 촉진된다. 그 反對로 企業統合에 대한 誘因이 強化되면 企業統合이 촉진된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모든 나라가 稅法上 借入金의 利子は 損金에 算入하지만 株主에 支給하는 配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借入金 코스트에 비하여 株式資本의 코스트가 높아져 企業의 資本充實化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借入金의 利子에 대하여는 受取하는 段階에서 課稅하고, 配當分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가 株主段階에서 조정(個人株主의 경우 配當扣除, 法人株主의 경우 配當益金不算入)되는 制度를 채택할 때, 配當에 대한 二重課稅의 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問題點이 있더라도 原則적으로 借入金의 利子和 配當에 대하여 差別的인 取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問題가 現實적으로 어느 程度 影響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斷定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法人稅가 經營의 非效率性을 증대시키는 逆效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法人稅負擔이 過重하게 되면 費用支拂額을 늘려 企業의 純所得을 감소시켜 課稅所得을 줄이는 傾向도 생겨날 수 있으므로 經營이 非效率化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인플레이期에 法人稅 增收에 의하여 投資需要를 억제하고자 할 때 그 負擔이 과중하게 되면, 오히려 經營의 非效率을 助長하여 產出量의 總供給을 감소시키는 反面에 賃金增加, 企業의 販賣·宣傳費의 過大支出 등 浪費的 經費支出이 늘어나 社會的 總需要를 증가시켜 인플레이를 더욱 深化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效果의 크기나 그 實現可能性도 分명한 것은 아니다. 企業이 항상 目標利潤率을 설정하여 그러한 條件下에서 行動한다면 法人稅

가 企業利潤을 그러한 限度以下로 감소시킬 때 法人稅의 逆機能이 現재화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Ⅲ. 改革方向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企業課稅는 高度成長을 목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우대되고 輕減되어 왔다. 이는 특히 1967년부터 推進된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支援하기 위하여 稅制가 開發 支援稅制로 轉換된 이래 더욱 그렇다. 더욱기 年이래 여러가지 經濟的 目的을 위하여 租稅減免도 계속 그 對象이나 규모가 늘어났으며, 租稅減免의 主된 受惠者는 企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結果로 法人稅 自體의 公平問題에 앞서 稅制 全體로서의 企業課稅(法人課稅) 負擔의 公平性을 검토하여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高所得者(個人)의 負擔만이 아니라 企業, 특히 大法人에 대한 負擔을 높여 稅負擔의 公平을 실현하는 동시에 公共部門의 可用財源을 늘려 國民生活優先의 負擔構造 내지 財政構造를 實現하는 長期的 轉換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租稅減免規模의 漸進的인 縮少가 이루어져야 하고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負

擔不均衡이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法人稅의 增收가 企業成長에 逆效果를 招來하는 面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法人稅의 經濟的 效果는 결국 法人稅의 轉嫁與否와 轉嫁의 程度, 그리고 企業의 行動에 左右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法人稅의 稅率引上, 특히 大法人에 대한 負擔增加가 반드시 逆機能만을 나타내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確認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企業은 단지 株主나 經營者를 위한 利潤追求의 手段은 아니며 社會的인 性格을 갖는 組織이다. 그런 점에서 大企業의 社會的 責任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고, 그 利潤은 어떤 형태이던 간에 社會에 還元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立場에서 우리는 企業課稅問題를 進면적으로 새로히 검토하여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具體的으로는 國稅收入중에서 法人稅의 寄與度를 높이는 問題와 相關된 稅率의 調整, 公開法人과 非公開法人간의 差別課稅를 비롯한 폭넓은 政策課稅에 대한 검토, 法人稅와 個人所得稅의 統合問題, 企業體質의 改善을 위한 效果的인 政策課稅의 方向, 企業利潤의 社會還元을 촉진시키기 위한 稅制上의 誘因에 대한 검토등이 그러한 것이다.

〈附表 1〉 分配 國民所得(1975年)

	金 額 (10억원)	構 成 比	
		%	%
國民總生産(GNP)	9,083.33	100.00	
(一) 間接稅	1,103.67	12.15	
(十) 補助金	123.77	1.36	
(一) 固定資本消耗充當金	752.28	8.28	
國民所得	7,348.15	80.92	100.00
被傭者報酬	2,854.34		38.84
農業所得	1,767.46		24.05
非法人企業所得	1,431.21		19.48
財產所得 ¹⁾	810.99		11.04
法人所得 ²⁾	463.94		6.31
政府所得 ³⁾	49.42		1.35

1) 消費者負擔利子 差減, 法人으로 부터의 配當포함

2) 配當, 法人貯蓄, 法人稅의 合計

3) 公債利子差減

資料: 韓國銀行

〈附表 2〉 企業所得斗 稅負擔(1)

단위 : 10억원

	GNP	法人所得	非法人企業所得	國稅收入	法人稅	事業所得稅
1 9 6 0	264.34	3.93	30.51	29.47	(0.92)	
6 2	348.89	13.37	39.67	28.24	2.14 (2.02)	1.38
6 7	1,269.95	54.11	180.03	129.24	16.51 (15.59)	12.36
7 0	2,589.26	108.29	348.47	334.72	42.70 (42.35)	33.08
7 2	3,860.00	158.49	546.11	433.45	55.48 (54.82)	36.40
7 3	4,901.63	234.38	873.38	521.49	52.42 (49.78)	45.38
7 4	6,747.07	347.49	1,276.50	844.67	115.42 (110.29)	64.37
7 5	9,080.33	463.94	1,431.21	1,255.48	154.06 (130.48)	65.83

國稅收入法人稅等 ()內表示, 事業所得稅는 稅務統計, GNP斗 法人稅는 國民所得資料.

資料 :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1976年.

國稅廳國稅統計年報 各年度.

〈附表 3〉 企業所得斗 稅負擔比率

단위 : %

	負 擔 率			所 得 比 重		租 稅 比 重	
	T/GNP	Tc/Ye	Ti/Yi	Yc/GNP	Yi/GNP	Tc/T	Ti/T
1960	11.96	23.41		1.60	12.39	3.12	
62	8.09	15.11	3.48	3.83	11.37	7.15	4.89
67	10.18	29.48	6.87	4.26	14.18	12.34	9.56
70	12.93	39.11	9.49	4.17	13.41	12.65	9.88
72	11.23	34.59	6.67	4.11	14.15	12.65	8.40
73	10.64	21.24	5.20	4.78	17.82	9.55	8.70
74	12.52	31.74	5.04	5.15	18.92	13.06	7.62
75	13.83	28.12	4.60	5.11	15.76	10.39	5.24

T=租稅

Y=GNP

Tc=法人稅

Yc=法人所得

Ti=事業所得稅

Yi=個人業主所得

資料 : 國稅統計年報

〈附表 4〉 法人稅率斗 法人收益率(美國)

단위 : %

	表 面 稅 率	製 造 業 部 門		全法人 課稅前利潤 分配率
		課稅後收益率	課稅後利潤마진	
1927-29	11-13.5	8.0	5.9	21.8
1936-39	15-19	6.3	4.6	14.8
1955-59	52	10.9	4.9	22.4
1960-63	52	9.5	4.5	20.6
1964	50	11.6	5.2	21.9
1965-67	48	12.7	5.4	22.1
1968-69	52.8	11.7	4.9	19.8
1972	48	10.6	4.3	18.0

出處 : R.A. Musgrave/P.B. Musgrave, 前掲書.